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3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신정훈·박지원·박홍배

박정현 • 박희승 • 주철현

조인철 · 임미애 · 박용갑

차지호 · 채현일 · 정동영

박해철 • 박수현 • 복기왕

유종오 • 강준현 • 한민수

김원이 • 황정아 • 양부남

정진욱 • 윤건영 • 임호선

송재봉 • 이상식 • 김문수

이건태 • 이학영 • 이광희

문금주 · 박선원 · 민형배

김영환 · 최민희 · 이재관

추미애 • 이기헌 • 김성회

정준호 의원(4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"을 "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의심사,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"로, "증인이"를 "제5조에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증인의 동행명령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	제6조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 ①		
<u>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</u> 위한	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,		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		
는 <u>증인이</u> 정당한 이유 없이	문회 등을		
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	<u>제5조에</u>		
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	<u>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</u> -		
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			
령할 수 있다.			
	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